

제2장 사회복지

제1절 포항의 사회복지

1. 포항시 사회복지의 역사

근대화 이후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 사회복지법의 주된 개념인 생존권의 발전과정은 생존권 보장의 주체, 대상내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취약계층, 요보호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은 전 국민의 생활문제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욕구나 문제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글 역시 포항시 사회복지의 역사를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제 입법을 바탕으로 입법배경이 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시대적 배경이라는 포괄적인 환경요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소 거시적·역사적 관점에 제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의 태동기(1960년대 이전) : 제한적 공공부조의 시작

(1) 일제하의 사회복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써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구호법에는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지 내지 구호비 분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며 구호대상은 비록 제한적 부조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그 대상을 명시하였다. 구호법이 1929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로 하는 생업부조 또는 현물급여 등의 극히 한정된 구호를 해왔다. 결국 1944년에 이르러 일본이 그들의 군사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자 비로소 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조선구호령)을 한국에도 확대·시행하였다.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일제하에 포함에는 현재 포항의료원의 전신인 ‘포항자혜의원’이 1939년 5월 15일 허가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술을 펼치게 되었다.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의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구호정책과 관련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와 「후생국보 3A호」 및 「후생국보 3C호」를 들 수 있는데 후생국보 제3호는 「조선구호령」과 유사하여 공공구호를 규정하였고,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규정을, 후생국보 3C호는 국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발표하여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였고,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하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의 구호법규, 아동노동법규 혹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등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역시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나 입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시기 우리 포항 지역에서도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이들을 수용·보호하는 고아원의 설치가 절실히 거론되어 1947년 3월 31일 영일군 후생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고아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경영할 인사와 원사건물 등을 물색하는 등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때 개인 박경호씨가 송도동에 대지 483평, 지상 건물 목조합석지붕 단층집 27평, 부속건물 축사 30평을 사비로 개수하여 1948년 9월 15일 ‘포항양육원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을 수용·보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포항 최초의 고아원 효시가 되었다. 이 시기 포항은 1949년 8월 15일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하였다(1시, 1읍, 13면, 1출장소).

(3) 한국전쟁과 1950년대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1952년 전쟁고아 수용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의 각종 구호시설들을 지도·감독할 필요에 의해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1953년 5월 1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과 더불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조건, 근로계약, 퇴직금 제도를 명시하고 고용주 책임제의 근로복지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56년 「어린이 헌장」을 제정·공포하여 미래의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종결하고 외원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정부는 독자적인 사회복지입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가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미 선교사 라이온즈목사와 포항 내 5개 장로교회 대표 오근목 목사, 그리고 미 해병대 군목 크리브즈 목사가 합의 창설하여 1953년 12월 9일 ‘선린애육원’이 대신동에 설립되어(1988년 현 위치 환호동으로 이전) 아동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50년 3월 25일 성모자애원이 영천군에서 영일군 송정리(현재 포스코 부지)로 이전하여 양로자, 아동, 장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로 운영되다가 1954년 5월 15일 재단법인 ‘성모자애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성모자애원은 1958년에 초곡동 3만평 부지에 나환자정착촌 베타니아마을을 조성하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주택과 생계수단으로 농장 등을 제공하였고, 같은 해 12월 죽도동 12번지에 최초의 무료급식소를 개설하였다. 1969년 1월에는 포항제철소 건립으로 현 위치인 대잠동으로 이전 하였고, 1971년 7월 8일 양로사업 허가와 장애인 사업 허가를 동시에 받았다. 1980년대가 되면서 전쟁고아의 성장과 사회진출로 정부 정책에 의해 1982년 10월 보육사업이 폐쇄되어 양로원인 ‘성모자애원 요셉의집’과 성인여성장애인 시설 ‘성모자애원 마리아의집(구 성인여성불구원)’으로 시설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마리아의집은 포항 최초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효시가 되었다.

2) 사회복지 제도의 생성기(1960~1970년대) : 사회복지 관련 법규들의 제정

1960년~1970년대에 절대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 정책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등 국가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영세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형태도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화 경향을 처음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절대빈곤인구 비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심화로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하여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화로 말미암은 지역 간 빈부격

차,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정치적 불안의 초래로 정부 역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1년 1월 1일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로서 의미를 갖는 「공무원연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동년 9월 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립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보호 및 공공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제정된 「갱생보호법」, 동년 11월에는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군사원호보상법」과 전쟁의 후유증과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한 윤락 등의 문제 발생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요청되는 「생활보호법」이 동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까지 약 40여 년간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같은 날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이는 앞에서 보았던 미군정기의 어린이헌장과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등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독립적인 입법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9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외국 입양을 합법화 시켰으며, 1962년에 「재해구호법」,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의료보험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은 당시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1977년 7월에 가서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제적용을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1968년에는 생활보호법의 보충적인 성격을 띤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1973년 12월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국민복지연금법 역시 의료보험법과 유사하게 경제적·기술적 여건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1988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비로소 실시되었다. 또한 1977년 「의료보호법」이 실시되어 이는 생활보호법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축을 이루는 법제로서 공공부조의 기본 골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이 제정·실시되어, 사업장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1970년도에 이르러 포항은 국가사회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도가 향상됨에 따라 고아 발생수도 감소되고, 제철회사 및 관련 공장들의 건립으로 인구증가와 고용증대 등으로 인해 탁아시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포항양육원유지재단은 시대적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에 부응하고자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1971년 3월 5일 ‘포항양육원 포항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1962년 말 포항시 전체인구는 62,047명이었고 이중 1급~3급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던 공공구호 대상자수는 152세대 412명이었으며 1965년 말에는 생활보호와 영세민 근로구호를 합해서 1,448세대에 6,504명 이었다. 1968년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취로사업이 실시되었고,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 영향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보호의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지원규정이 제정되어 학비지원이 실시되었다. 또한 1976년 7월 죽도동에 ‘포항시여성회관’(현 여성문화회관)이 개관하여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사업, 놀이방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3) 사회복지 제도의 정비기(1980년대) : 기존 사회복지 법규의 확대·개편 및 신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

1980년대는 잇따른 학생운동의 영향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존 노조의 민주화, 신규 노조의 급속한 증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의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 유기 및 정서장애아동 등의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된 시기이다. 따라서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제라든지 혹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회복지법」이 입법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980년 12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의 기금조성에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198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역할 상실 및 핵가족화 문제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적으로 입법화 되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되었고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1961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아동복지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고, 1986년 「강생보호법」 개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이 「국민복지연금법」을 대신하여 개정되어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는 한편,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8년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고, 동년 11월에는 「보호관찰법」이 입법화됨으로써 갱생보호제도와 함께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입법되고, 동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어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이시기 포항시는 1981년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1982년에는 영세민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생업자금융자 등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영향으로 1983년부터 시작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의 질병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었고, 1988년부터 포항시에서는 가정복지과가 설치되어 노인승차권 지급, 노령수당 지급,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 목욕권 지급, 효행자 발굴 및 포상, 노인건강진단,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정비, 경로당 및 노인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당시 65세 이상 노인 10,577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업무를 실시하였다. 당시 노인복지시설로는 양로원 1개소, 노인회관 1개소(1986년 대아그룹 황대봉회장 기증, 상대동 소재), 경로당 55개소, 노인교실 2개소가 운영되었다. 또한 여성복지사업으로는 윤락여성 선도사업,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 건전가정가꾸기운동, 동거부부 결혼사업, 일본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여성단체조직, 주부예지대학운영, 여성지도자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민간에서는 1989년 10월 대도동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결연사업 및 재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모자복지법의 영향으로 포항양육원유지재단이 모자보호시설인 ‘포항모자원’을 1989년 10월 개원하였다.

4)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기(1990년대) : 사회복지 관련 법규들의 내실화 및 기본 통합 법규 체계 마련

1990년대는 경제적으로 IMF 금융위기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로 정리된다. IMF의 여파로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그리고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되면서부터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 파탄, 자살, 알코올 중독, 과로사, 생활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표출되었다.

1991년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보호자와 함께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지게 됨을 명시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이 해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때를 대비하였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입법화하여 증가하는 고령자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1993년에는 그 동안 실업과 고용축진 등의 문제를 취급하던 기구를 종합화·체계화 하여 「고용보험법」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소득보장과 함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0년대 경제성장의 과실로는 가치관의 혼란과 여권신장으로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성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농어민연금의 시행과 더불어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형식적 법으로서 그 기능이 사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이 요청되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예방·치료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화가 요청되었던 것에 대응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등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고,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는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영세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법」이 2월에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동법이 실시되기 이르렀다. 또한 동년 9월에는 1961년 제정되었던 생활보호법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확대 개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자활과 자립을 촉진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10월 1일에 전면 실시 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97년 말 IMF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계층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0년 9월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는 기존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근로무능력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한된 인구계층에 한하여 실시되었던 생활보호제도가 IMF 경제위기로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능력 저소득층들 문제를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93년 포항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는 1,927세대 4,996명으로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사업, 자립기반조성사업, 교육보호,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용촉진, 생업 자금융자, 생활안전자금융자, 취로사업 등이 실시되었으며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 영구임대주택임주보증금 융자, 불우이웃성금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조성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2개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생활보호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아동복지분야에서는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의 영향으로 포항시 가정복지과에서 13개동 28개소 어린이공원 설치, 시설수용아동 건전육성사업(불우아동결연, 시설아동정서순화, 시설성장아동 자립대책 등), 소년가장지원사업(1993년 17세대 36명), 영유아보육사업(1993년 41개 시설 1,131명 중 2개 시설 운영비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포항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2억5천8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006년까지 496명에게 2억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해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하였으며, 1999년 4월 국민연금제도의 완전실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1993년 4월 ‘덕동청소년수련원’, 1997년 7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1998년 3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이 차례로 개관하여 지역 내 청소년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민간에서는 1993년 7월 학산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994년 10월 창포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 차례로 개관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내 지역사회복지관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5.01.12 조례제0045호/개정 1999.01.18 조례제0364호)를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해서 1994년 천주교회에서 해도동에 노인무료급식소 ‘바오로의 집’과 비보약국에서 대신동에 ‘빈센치오의 집’을 열었다. 이어 1996년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장수식당’에서도 무료급식을 실시하였다. IMF 이후 1997년 정영생씨가 포항실내수영장에서 ‘나눔의 집’, 1998년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에서 대흥동에 ‘만나의 집’, 기쁨의 교회에서 ‘북부 나눔의 집’, 2000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터’ 등을 열어 기존의 결식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에게도 무료급식을 실시하였다. 또

한 포항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관련 상담시설로는 1998년 3월 12일 ‘(사)포항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9년 1월 11일 ‘가정폭력상담소’ 개소와 함께 2003년 2월 20일 이후에는 ‘통합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다(현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1999년에는 해도동에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쉼터 운영 등을 위한 ‘포항 청소년 사랑의 집’이 개소되어 지역 내 중퇴 및 비행청소년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년 초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가 결성되어 5월에 ‘제1회 포항시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듬해인 2000년 11월에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IMF 이후 포항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의 일자일 창출을 위해 1999년 9월 1일 ‘포항지역자활센터’를 시작으로 이듬해 2000년 8월 1일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의 개소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포항지역자활센터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2004년 7월에 개소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사업, 진학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1999년 북구보건소 내 ‘포항시정신보건센터’가 개소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엔 지역 주민의 알코올 문제 인식제고와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포항시알코올상담센터’가 개소하였다.

‘포항시장애인복지관’이 1997년 5월 개관하였고,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1998.01.12 조례제0291호/개정 1999.01.18 조례제0361호/ 개정 2004.07.27 조례제0687호)가 제정되어 관내 장애인들의 의료, 재활, 재활훈련, 특수교육, 재활훈련요원양성 및 훈련사업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이슈화되는 시기에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대표 김지찬(법명, 난승)이 순수자부담으로 빈곤노인들을 위한 포항최초의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을 1년간의 준비현상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극복하고 1999년 12월 10일 건립 개원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포항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7.01.11 조례제0257호/전면개정, 2000.07.27 조례제0473호/개정, 2004.07.27 조례제0688호/개정, 2007.01.02 조례제0821호/개정, 2007.05.31 조례제0843호)

「포항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1997.06.11 조례제0269호/개정, 2003.09.25 조례제0617호/개정, 2007.01.02 조례제0821호/개정, 2007.05.31 조례제0843호)

「수련시설 운영조례」

(1998.01.12 조례제0289호/개정, 1998.09.28 조례제0337호/개정, 1999.01.18 조례제0358호/개정, 2000.07.27 조례제0482호/개정, 2004.07.27 조례 제0694호)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1999.10.06 조례제0396호)를 제정하여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흥·용흥동 일대를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표지, 안내표지판 및 순찰함 15개를 설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경찰,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 복지 사업을 펼쳤다.

5) 사회복지의 지방화(2000년대~현재)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권한 강화

200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정보화사회·디지털사회·세계화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지구공동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진 시기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적으로는 제3의 길이 사회적 관심의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국내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2000년 이후 제정 및 개정된 법규를 살펴보면 2000년 1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기존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2001년 4월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2월에는 현대사

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5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년 12월에는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와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동부조제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단 이 법은 5년이란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 2010년 12월 22일에까지 유효한 법이다.

기존 「모자복지법」이 모자 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2002년 12월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7년 뒤인 2007년 10월에 또 다시 명칭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4월에는 생활에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4월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2000년대 이후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어 사실상 2008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국면을 맞았다. 또한 2008년 3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올해부터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는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근로를 하여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함을 인지하고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년 1회 지급하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 따라 포항시에서도 2001년 4월 기존 여성복지담당 조직 외에 여성정책팀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2003년 10월 1일 기구를 대폭

확대하여 여성청소년과를 설치하고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자원봉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여성부가 후원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평가하는 여성정책종합평가(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에서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결과 총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지원, 기타 여성발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14일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인복지로는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한 노인교통비(2006년 기준 월 9,600원) 지급 및 무의탁 노인을 선정하여 노인연료비를 지원하였고, 2004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주당 3일 이내 근무로 월 2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의탁노인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를 묻기 사업을 실시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인원 5,272명에게 총 104,94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를 위해 효행 실천과 관련이 있는 지역 및 다른 마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효시범마을 지정사업을 200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하여 휴게소 설치, 관련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시설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동년 11월에 「경북노인보호기관」이 포항에 개소하였고, 2005년 10월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진 지역공동체 구축 및 더불어 살아가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시에 2003년 10월 자원봉사담당을 신설하고, 자원봉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포항시 종합자원봉사센터(1996년 12월 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포항시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제정, 2004년 6월 26일 공포하였다.

포항시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기존의 방과 후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아동복지법상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포항에서는 2005년 11개소 등록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현재 32개소가 등록된 상태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포항에서도 2004년 10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

되었고,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4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1월 ‘포항시니어클럽’의 개소와 2007년 10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개소로 지역 내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10월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로 가족상담사업, 돌봄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2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규정이 신설하였고, 포항은 그 1년 전인 2007년 3월에 ‘포항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영향으로 2008년 5월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문화회관 내 개소하여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피해 보호 및 지원, 아동 보육 및 교육 실시, 산전 및 산후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의 진행에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포항시의 조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2000.06.10 규칙 제0301호/개정 2003.09.25 규칙 제0381호/개정 2007.07.09 규칙 제0478호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000.10.26 훈령 제0109호/개정 2007.07.09 훈령 제0191호/개정 2008.03.18 훈령 제0200호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1.01.10 조례 제0519호/개정 2006.08.08 조례 제0806호/개정 2007.01.02 조례 제0821호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2001.12.24 조례 제0554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2004.07.27 조례 제0686호

「포항시 장애인재활자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1.11 조례 제0731호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005.07.26 조례 제0753호/개정 2006.08.08 조례 제0805호/개정 2007.01.02 조례 제0821호/개정 2007.05.31 조례 제0843호/개정, 2008.10.21 조례 제0892호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06.04.03 조례 제0779호

「포항시 보육 조례」 2006.10.04 조례제812호/개정 2007.01.02 조례제821호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 규정」 2006.12.19 훈령제183호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20 조례 제862호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2007.04.10 조례 제0836호/개정 2007.05.31 조례 제0843호/개정 2008.10.21 조례 제0892호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1.11 조례 제0868호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2008.10.21 조례 제0895호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1.17 조례 제0901호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08.7.24 조례 제0884호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2008.10.21 조례 제0895호

2. 포항시 사회복지 자원현황

1)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상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뉜다.

포항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없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소 등이 있다. 또한 시설이 아닌 가정에 계시는 재가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다양한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요보호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포항시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병원 현황이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정 애 원	김지찬	청하 청계리881-1	105/101	29	열 린 가 람	김지찬
햇 빛 마 을	안현숙	대잠동270-2	110/107	54	성 모 자 애 원	이광옥
원 광 보 은 의 집	정학성	우현동454-4	78/76	41	삼 동 회	김태회
학계노인전문요양원	이광호	장기 학계리530	28/20	14	가은복지재단	김기원
실 버 힐 하 우 스	이문환	신광 흥곡리354-1	60/60	31	선린복지재단	권인찬
위 덕 어 르 신 마 을	김상조	연일 달전리531	50/50	22	진각복지재단	김상균
원 광 보 은 원	차동찬	죽도동701-2	12/10	12	삼 동 회	김태회
갈 린 리 마 을	문혜정	청하 신흥리1-5	60/37	12	한기장복지재단	전춘석
유 락 원	손지완	장기 산서리523-2	14/13	13	향 산 복 지 회	김병관
선 재 원	허봉출	남빈동 413-7 선재빌딩	22/22	9	열 린 가 람	김지찬
붓 다 요 양 원	한성원	흥해 초곡리347	45/5	12	한국불교태고원	김종문
손안애노인요양원	박혜숙	동해 공단리547	9/5	6	개 인	
노 인 사 랑 의 집	구순희	오천 세계리842-11	9/4	5	개 인	
인덕노인요양센터	이평기	인덕동161-2	26/26	9	개 인	
석병교회하늘마음	이 훈	구룡포 석병리640-2	35/35	19	개 인	
포 항 요 양 원	이석만	양덕동 1245-10	16/16	7	개 인	
참 사 랑 요 양 센 터	박란수	오천 문덕리371-2	9/4	4	개 인	

포항시노인요양병원현황

병원명	병원현황				법인명
	개설자	주소	병상수	종사자	
포 항 이 병 원	장성호	죽도동 614-6	174	75	동 신 의 료 재 단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변승렬	용흥동 315	166	46	경상북도지방공사
포 스투 요 양 병 원	유재홍	흥해읍 옥성리 177-3	68	15	보 해 의 료 재 단
광 명 요 양 병 원	이영식	두호동 1068-2	54	31	회 학 의 료 재 단
포 항 요 양 병 원	홍일	흥해읍 용천리 735	118	45	개 인
고 려 요 양 병 원	이호근	흥해읍 이인리 291	155	80	개 인
로 뎀 요 양 병 원	김영숙	장성동 1405-8	64	26	생 명 샘 의 료 재 단
노인간호나라요양병원	한성기	흥해읍 덕장리 948-2	64	40	화 암 의 료 재 단
포 항 성 심 요 양 병 원	임성률	상원동 467-1	98	45	개 인
장 성 요 양 병 원	김찬용	장성동 1515-10	98	49	한 원 의 료 재 단
선 린 요 양 병 원	김병식	대신동 74-1	167	87	개 인
포 항 송 라 요 양 병 원	최동하	송라면 광천리 901-24	69	40	개 인
경 희 요 양 병 원	이순자	송도동 438-1	140	80	개 인

(2)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108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정부보조에 의해 건립되어지거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익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법인시설)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기쁨의노인주간보호센터	조경래	동빈동69-4	15/11	4	기쁨의복지재단	윤오권
새한노인주간보호센터	배호경	인덕동229-2	20/20	5	한기정복지재단	전춘석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안현숙	대잠동 270-2	20/19	10	성 모 자 애 원	이광옥
나오미의집단기보호센터	신복음	흥해 용곡리340	8/8	5	함께하는마을	이명희
문덕노인단기보호센터	박미연	장기 금곡리332	6/6	4	문 덕 복 지 재 단	이평기
좋은이웃마을노인복지센터	노승택	연일 중명리741	36/31	14	포항노회유지재단	김정치
좋은이웃가정봉사원파견센터	안은영	흥해읍 중성리 24-1	80/74	7	포항노회유지재단	김정치
포항가정봉사원파견센터	김진월	대도동 632-11	80/80	5	어 린 이 재 단	김상원
가람가정봉사원파견센터	황영훈	학산동 346	80/80	5	열 린 가 람	김지찬
기계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서봉화	기계면 현내리 473-2	80/80	5	한기장복지재단	전춘석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에 대한 각종상담, 건강증진·교양·오락 등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포항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포항시노인복지회관1개소	536개소	4개소	0개소

(4)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의 인권침해를 신속히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도와주기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	조경래	동빈동69-4	-	6	기쁨의복지재단	윤오권

(5)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거리 창출 관련기관은 아래표와 같다.

포항시 노인일자리창출기관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시니어클럽	박정희	남빈동 417	6	열린가람	김지찬
포항노인일자리창출센터	김상조	신흥동 663	3	진각복지재단	최종웅
포항노인취업센터	김시영	대도동632-7	1	대한노인회 포항시지부	김병관

2)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복지법상 크게 3가지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분류한다.

(1)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마 리 아 의 집	최순호	대잠동270-2	60/56	20	성모자애원	손일연
한 사 랑 의 집	김달근	연일 택전리368	29/25	4		
베들레헴공동체	성대현	송라 대전리186-1	10/5	2		
향 기 마 을	윤명례	흥해 오도리 산47	40/30	20	안동애명복지촌	남숙자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지역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장 애 인 중 합 복 지 관	김정렬	해도동181-1	-	45	대 구 카 톨 릿 사 회 복 지 회	최영수
사 랑 의 동 산	신경자	흥해 이인리477	17	4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포항시지부	최외출
늘사랑주간보호센터	김옥희	용흥동411	15	3	사)경부지적포항시지부	김옥희
우 함 주 간 보 호 센 터	박두환	청림동564-10	12	3	에 티 켄 터	김옥희
우리집공동생활가정	김일근	대도동114-5	4/4	1	우 리 공 동 체	황화자
나 눔 의 집	김일근	대도동114-16	4/4	1	우 리 공 동 체	황화자
멘 토 의 집	서은주	해도동124-7	4/4	1	해	솔 서은주
은 해 의 집	서은주	해도동126-3	4/4	1	해	솔 서은주
해 뜨 락 주 간 보 호 센 터	최중현	청하 덕성리171	15/15	3	나 전 복 지 재 단	김옥희
예 량 의 집	김일근	대도동	4/4	1	우 리 공 동 체	황화자
경 북 점 자 도 서 관	이재호	해도동33-206	-	6	경 북 시 각 장 애 인 협 회	김장환
경북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김장환	해도동33-206	-	6	경 북 시 각 장 애 인 협 회	김장환
포항시작장애인심부름센터	양현수	해도동431-26	-	4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포항지회	양현수
포 항 수 화 통 역 센 터	이종학	해도동122-8	-	5	경 북 농 아 인 협 회 포 항 지 부	이종학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최외철	두호동 미문빌딩2층	20	4	한국장애인부모회포항시지부	최외철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 및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나누우리터	김인석	흥해읍 오도리 산4	31/31	4	안동에명복지촌	남숙자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	이경목	두호동 1100-10	18/18	3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포항시지부	이용성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이상헌	청하면 소동리742	30/30	4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최영수

3) 아동·청소년복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로 구분된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시설의 종류는 크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나뉜다.

(1) 아동양육시설

포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선린애육원	이희동	환호동 산17	100/74	16	선린애육원	김정치

(2) 공동생활가정

포항시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좋은이웃그룹홈	이은숙	덕수동 청우맨션 103호	7/5	2	굿네이버스	정해원

(3) 아동복지관

포항시 아동복지관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선린아동복지관	이희동	환호동 산17	-		선린애육원	김정치

(4)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운영주체	개소	센 터 명
개 인	20	구룡포, 그리심, 대명, 대해, 덕수, 무지개, 문덕파랑새, 사랑의공부방, 우리, 장기숲, 포항다솜, 포항빛살, 해오름, 환여동, 흥해, 참사랑, 그림속세상, 웃음꽃, 하늘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7	청림좋은이웃, 해도좋은이웃, 포항, 학산, 기쁨의 지역아동센터, 양포행복한홈스쿨, 동부행복한홈스쿨
사 단 법 인	2	늘푸른, 바다술 지역아동센터
종 교 법 인	1	한울 지역아동센터
재 단 법 인	1	창포 지역아동센터
의 료 법 인	1	선린 지역아동센터

(5)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 및 안전을 추구하며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시 설 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이은숙	상도동 18-254 2층	-	7	굿네이버스	정해원

(6)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관련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시 설 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청 소 년 문 화 의 집 청 소 년 지 원 센 터		환호동 185			포항시직영	
구룡표청소년수련원		구룡포읍 석병리 산11	470		포항시직영	
덕 동 청 소 년 수 려 원		기북면 오덕리 235-1	200		포항시직영	
포 항 청 소 년 쉼 터	문혜정	두호동 224-11	10	2	내일을 여는집	배호경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중장기청소년쉼터)	정동화	덕수동 38-6	7	3	포항청소년복지회관	정동화
한터울청소년야영장	김규태	동해면 공당리 451	500		개인	
포항청소년자활지원관	김경모	남빈동 413-7		2	열린가람	김지찬

4) 여성복지

포항시 여성복지시설로는 대표적으로 모자보호시설인 포항모자원과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이 있다.

(1) 모자보호시설

생계가 곤란한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모자보호시설 현황

시설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모자원	신인숙	송도동 436-44	23세대	5	포항양육원 유지재단	김명숙

(2) 요보호 여성 상담 및 보호 시설

요보호여성을 수용·보호하며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능력 함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요보호 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

시 설 명	시 설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구분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김경희	송도동501-22	-	5	통합상담소 (성폭+가폭)
한마음통합상담소	홍종락	죽도2동46-34	-	5	
포항미래상담소	김정은	용흥동92-28	-	3	성폭력상담소
포항YMCA가정폭력상담소	박해숙	대도동127-2 일선빌딩6층	-	2	가정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장기순	동빈1가74-39 2층	-	2	
로댐나무가정문제상담소	양승오	흥해 마산리	-	3	
환여동 가정상담소	이현목	환호동505	-	2	
한국가정상담센터	김순려	두호동 롯데상가209호	-	2	
무지개가정문제상담소	이갑조	기계 현내리486-3	-	3	
포항미래상담소	김정은	용흥동92-28	-	3	
성매매피해상담센터새날	황복희	대흥동607-2	-	4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피난터1366					피해자 보호시설
소망의집	정희경	대잠동712-6	15	3	
누리봄	남시옥	해도동44-23	9	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3) 기타 기관

지역 내 기타 시설로는 포항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며 실업자재취업훈련, 사회적일자리 여성취업지원사업 무료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여성문화회관은 지역 내 여성들의 여가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수영장 운영, 교육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보육사업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보육사업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포항시 보육시설 현황

시 설 현 황				
국공립 운영	법인 운영	직장 운영	민간 운영	가정 운영
12개소	12개소	5개소	172개소	197개소

6) 지역사회복지기관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인체의 조직적, 비조직적 사회적인 노력을 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기관 현황

시 설 명	시 설 현 황				법 인 현 황	
	시설장	소재지	입소인원	종사자	법인명	대표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김진월	대도동632-11	-	12	어 린 이 재 단	김상원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 형	학산동346	-	12	열 린 가 람	김지찬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진선하	창포동645	-	12	포 항 Y M C A	박하중
포항근로자복지회관	황우찬	남구 호동 628	-	9	민 주 노 총 포 항 지 부	이전락
포항지역자활센터	김경모	남빈동 413-7 선재빌딩	-	6	열 린 가 람	김지찬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송애경	죽도동 20-38	-	5	노동과 복지를 위한 시민연대	김병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권순남	동빈동 74-15	-	7	포 항 볼 런 티 어 2 1	권순남

7) 기타 기관

포항시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살펴보면 푸드뱅크 사업은 포항푸드마켓, 경동교회, 내일을 여는집, 흥해제일기초푸드뱅크, 우리기초푸드뱅크가 있다. 그리고 포항시정신보건센터,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항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이 있다.

제2절 자원봉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족과 씨족의 공동사회 내의 개인적 형태의 전통적 상부상조와 종교적 자선사업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시작된 190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역사를 근대이전(1950년 이전), 발아기(1950~59년), 시행기(1960~69년), 확대기(1970~79년), 변환기(1980~89년), 성장기(1990~현대)의 여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1980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돕거나 사회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단이 1985년에 조직되는 등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86아시안게임, 1988올림픽은 자원봉사의 정점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들 자원봉사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또는 자체의 정규직원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유치하려는 사회복지조직, 즉 사회복지기관, 시설 내지 단체들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인 제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이 촉진되었다. 민주화의 열기와 운동,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사회복지 실현의 구호 외침과 사회복지 관계자와 정부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관심증대는 특히 1994년 언론사 및 1995년 교육개혁조치로 인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화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어졌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상북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화된 서비스만으로 부족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자 이 둘을 연결하는 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96년 12월 16일 개소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욕구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과업 추진을 위한 봉사팀 발굴, 봉사자 모집과 홍보·배치·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또한 높아져 근래에는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실현의 기회로 삼아 생활문화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전개되고 있는 ‘범사회적 운동’이며,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계층이 고무 참여하고 있는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특정 기간에만 실시되는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연중무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왜’ 자원봉사가 소중한지를 공감하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서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연혁

1996.12.16	포항시·재단법인 한울타리와 자원봉사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개소
1997.04.05	문화유산 가꾸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천대회
1997.12.22	포항지역 교통봉사 4개 단체 교류·연대를 위한 간담회
1998.04.05	포항시 자원봉사 문화유산보존활동 발대식
1998.05.09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
1998.05.19	제1기 자원봉사지도자 교육
1998.10.31.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회
1998.11.10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998.11.29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예술대축제
1999.2.4-5	제1기 보호관찰상담 봉사자교육
1999.10.10	사랑의 삼각끈 잇기 개최
2000.04.27	포항시주부봉사단 발대식
2000.07.20	자연사랑 등반회 발대식
2000.10.24	제1회 주부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2000.12.26	포항시 자원봉사 비전 세미나
2001.03.25	월드컵 청결봉사단 발대식
2001.05.26	경북지역 자원봉사무결운동개최(청정포항바다만들기 자원봉사대행진)
2001.05.01	제1회 포항사랑 자원봉사대축제
2001.08.27	병원자원봉사자 파견(포항세명기독병원)
2001.09.10	포항시청 민원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2001.12.07	한국자원봉스포럼 제28회 정기포럼개최
2001.12.28	포항시 자원봉사자대회개최

2001.12.12	제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대상수상(동지회)
2001.12.12	IYV2001한국위원회 물결운동 참여상 수상
2001.12.12	전국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대상 수상
2002.04.15	경상북도 자원봉사담당 공무원교육
2002.09.05	김천 수해복구활동(태풍루사)
2002.12.06	전국자원봉사센터소장 컨퍼런스개최
2002.12.10	종합자원봉사센터 발전전략 개발 워크숍
2003.07.07	포항시 단양군자원봉사센터 자매결연
2003.08.01	이동자원봉사센터 첫 시행
2003.08.27	경북 풀뿌리 자원봉사 리더십향상 워크숍
2003.09.28	재난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김천)
2003.12.12	경북자원봉사자대회 우수프로그램공모 대상
2004.03.20	설해복구 자원봉사활동(예천)
2004.06.22	포항시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2004.06.29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조례제0646호)
2004.09.23	지역자원봉사대 발대식(4개동)
2004.11.30	경북자원봉사경진대회 우수상
2004.12.31	호미곶 해맞이축전 떡국 나눔 활동 첫 시행
2005.04.02	가족자원봉사단발대식
2005.04.14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설명회 및 인증서 체결식
2005.05.26	포항시자원봉사동아리 연합회 창립
2005.06.30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울림’ 발간
2005.10.03	사랑과 희망 나눔 천사(1004)데이 걷기운동
2005.10.15	제1회 포항시자원봉사박람회
2005.10.15	제1회 포항시 자원봉사자 화합체육대회
2006.02.20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실시
2006.04.03	발마사지 전문자원봉사교육
2006.08.01	재난재해복구활동(단양군, 평창군)
2006.08.23	행복한 노년! 은퇴시민을 위한 자원봉사 아카데미
2006.09.13	한여름 사랑의 김장나누기
2007.03.05	전문자원봉사단육성교육(발마사지, 도배)
2007.05.02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전 개소식(동빈동)
2007.06.16	학생자원봉사단 결의대회

2007.12.15	태안반도 기름유출지역 재해복구활동
2007.12.24	실버자원봉사단 발대식
2008.05.29	포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
2008.06.11	울릉군자원봉사센터와 자매결연체결
2008.07.23	인형극 전문자원봉사단조직
2008.07.31	봉화군 춘양면 재해복구활동
2008.08.19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문개정(조례 제0887호)
2009.07.20	포항시 홈스테이 호스트 인증식
2009.09.17	선린대학교 산·학 협력체결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체결

1. 자원봉사센터 현황

1) 일반현황

설립일	운영형태	운영기관	소장	인원	소재지	면적
1996.12.16	민간위탁	포항볼런티어21	권순남	7명	포항북구동빈1가 74-15	482.4㎡

2) 자원봉사등록현황

등록인원 (명)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54,863	27,022	27,841	3,977	7,341	14,382	18,042	9,148	1,973

3) 봉사단별현황

합계(명)	동아리연합회	전문자원봉사단	기업자원봉사단	지역자원봉사대	가족자원봉사단	공무원봉사자	기타봉사자
54,863	1,733	402	19,878	2,296	292	1,865	28,397

4) 직업별현황

합계	직 업 별									등록단체	
	주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자영업	퇴직자	대학생	중고생	기타	단체수	회원수
54,863	18,479	20,151	1,907	924	3,953	478	2,343	2,590	4,038	425	25,527

5) 활동현황

계	복지 보건	지역 사회	환경 보전	청소년 보호	교육 상담	인권 옹호	범죄 예방	교통 질서	재난 재해	문화 체육	소비자 보호	공명 선거	국제 협력	공공 행정	기타
280,159	130,607	21,105	21,268	3,334	30,004	62	12,565	10,385	1,660	38,153	53	442	136	8,773	1,612

6) 교육현황

구분	기 초 교 육		보 수 교 육		전 문 교 육		비고
	회수(회)	인원(명)	회수(회)	인원(명)	회수(회)	인원(명)	
90회/3,984명	44	2,663	11	364	35	957	

7) 상해보험운영

보험가입				보험금 수령		비 고
인원수	금액(천원)	1인당 평균보험료(원)	보험사	인원수	보험금(천원)	
17,084	23,718	1,388	LIG손해보험	6	6,237	

2. 자원봉사 주요사업

1) 참여홍보·촉진·인정·옹호사업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 참여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일반적 인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대변하며 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연중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를 담은 소식지 《울림》을 연 2회 발행하여 최근 자원봉사 동향과 단체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5년도부터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학습하고 체험의 장을 만들었으며,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부각되면서 활동자들의 실적관리 전산화 필요성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들에게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선정하여 해당업체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에는 25,000여 명이 보험에 가입 중이며 연

간 10여 명이 상해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7년 이후 매년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을 설정하여 단 하루라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이웃,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보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1년 제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리 포항 동지회팀이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이후에도 포스코, 포항해양경찰서, 동지여상 목련인터렉트, 해오름도우미, 해병대훈련캠프, 포스텍 물리실험팀, 한동대 아낌없이주는나무 등 다양한 팀이 수상하였으며, 매년 연말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선발하여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포상함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 자원봉사 의식,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컨설팅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지도자,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성장을 가져오고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식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꾸준한 개발을 통해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더불어 기관 단체, 기업,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강사진들이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원봉사 리더양성과 전문인 육성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원봉사강사 및 상담가교육과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 현장의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어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도배,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종이접기, 건강아령체조 등의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4,000여 명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의 심각한 이슈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돕고, 타 단체 및 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관한 욕구를 해결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단체에 보급한다.

가족자원봉사단, 전문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실버자원봉사단과 지역자원봉사대, 공무원플러스봉사단, 월드컵청결봉사단, 경로당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과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안내, 민원안내, 시정홍보, 외국어통역, 안전 등 맞춤형 테마형 프로그램을 컨설팅하는 등 자원봉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4) 유관기관과의 협력

우리 포항은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인 포스코와 관련기업들이 있으며, 2개의 대학교와 2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형성되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자원봉사의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570개가 넘는 자원봉사 동아리와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크고 작은 문화체육 행사 및 나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5) 자원봉사 관리운영의 체계화

자원봉사 활동이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으로 인해 관리운영체계 또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본인의 자원봉사활동 기록을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원봉사마일리지 행복은행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2006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평가 받는 등 자원봉사 수탁기관인 (사)포항볼런티어21의 모범적인 관리운영으로 전국 최상위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은 철강과 우직하고 강직하며 지역 간 계층 간 차별화된 지역으로써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거친 물질적 사회분위기의 동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정적인’ 지역으로써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가진 기득권이나 특권의식,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여유와 질을 보다 넓은 지역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나누도록 ‘나누는 것이 특별한 권리이며, 가진 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서로 돕고 나누는 살기 좋은 공동체로써 지역 주민 간에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살기 좋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99.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이성록, 《자원봉사 매니지먼트》, 지식과 경영, 2003.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포항시, 《포항시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2006.
-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섬김과 사랑의 발자취 70년》, 2006.
- 경상북도, 2007~2010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 서울행정시스템, <포항시 통계>
- 포항시 자치법규(www.elis.go.kr)
- 법제처(moleg.go.kr)
- 시정백서(www.ipohang.org)